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. 4. 18 선고 2022가단9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

변 론 종 결 2023. 3. 14.

판 결 선 고 2023. 4. 1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전남 해남군 D 답 2,840㎡에 관하여, 피고와 E 사이에 2021. 10. 13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0. 20. 접수 제24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E은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, 2021. 9.

23.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, 2022. 6. 20. 기준 E의 미지급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는 합계 65,173,363원이다(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위 채권을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가단20044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2. 2. 4. ‘E은 원고에게 61,009,654원 및 그중 8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.2%의, 5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.4%의, 32,600원에 대하여는 2021. 10.

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, 1,561,676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.9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,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다. E은 2021. 10. 13. 피고와 전남 해남군 D 답 2,840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0. 20. 접수 제24212호로 2021. 10. 13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.

라.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은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, 7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

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E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피고의 주장

피고는 E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F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인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.

한편,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,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).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,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0015 판결,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2430 판결 참조).

앞서 인정한 사실, 앞서 든 각 증거, 을 제1,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① 피고는 E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, E이 중개를 의뢰한 공인중개사 F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
②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5,500만 원을 지급하였고, 위 매매대금이 적정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.

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베틀 경작하였고,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.

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이 전혀 없었고, 달리 피고가 E의 채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은 찾을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이유 있고,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경준